



## 대구광역시 수성구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일부 개정 알림

---

### 1. 관련

가.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3203(2026.6.8.)호

나.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-8701(2026.6.8.)호

2.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(제2권) 중 일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·시행하니,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업안내(지침) 개정 내용      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(제2권) P402

#### (2) 퇴직연금제도

-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대표 또는 시설장은 종사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, 개인형퇴직연금의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

※ 근거 : <근로기준법> 및 <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>

**※※ 보험회사의 종신보험, 연금보험 등은 퇴직금 적립수단으로 불가(원금손실 및 목적외 사용 우려 상품 불가)**

붙임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일부 개정 1부. 끝.

##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



수신자 재가노인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\_2번), 재가노인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\_3번), 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\_1번)

주무관 **박은경** 노인지원팀장 **박미숙** 복지정책과장 **이승명** 전결 2026. 6. 9.

협조자

시행 복지정책과-35726 (2026. 6. 9.) 접수

우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(범어동) / [www.suseong.kr](http://www.suseong.kr)

전화번호 053-666-2552 팩스번호 053-666-2560 / [speed1@korea.kr](mailto:speed1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스팸메일 삭제하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주세요!